

제435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5월12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청회 개최의 건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12.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13. 농어업회의소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14.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15. 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5)
16. 농어업회의소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2)
17. 농어업회의소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18. 농어업회의소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8)

상정된 안건

1. 공청회 개최의 건 2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2
12.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25
13. 농어업회의소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25
14.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25
15. 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5) 25
16. 농어업회의소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2) 25
17. 농어업회의소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25
18. 농어업회의소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8) 25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48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48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48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48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48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48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48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48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48

(10시37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님 등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위 공청회는 간사 간에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함에 따라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38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를 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님이십니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이진산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위 과정에서 예전에 입법 발의된 내용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 소위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유념하셔서 소위에서 쟁점이 정리된 부분은 쟁점이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회의 운영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원승연 존경하는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진술인 원승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명지대 원승연 교수입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 기반입니다.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자율적인 협동조직이며,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동안 농업인 그리고 농업·농촌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기여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협중앙회의 각종 비리, 불투명한 운영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표면화되면서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농협개혁추진단은 농협중앙회 조직 개선을 중심으로 한 1차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필요성은 조합원, 국민 모두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경연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가 이번 개혁에 찬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임직원의 비위 문제,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 중심의 운영구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개혁이 일부의 주장처럼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의제가 아니라 조합원과 국민이 공감하고 요구하는 사안임을 보여 줍니다.

이번 농협 개혁의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도, 중앙회도, 특정 임직원도 아닙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중앙회장선거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일반 조합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 구성원이 소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의사로 중앙회장을 선출해서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원을 바라보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거인이 소수면 담합으로 일반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조합원 전체로 하여 소수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시행한다면 현재와 같은 금권선거의 유인은 낮아질 것입니다. 후보자는 더 많은 조합원에게 정책과 비전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주권의 실질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조합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만큼 감시의 눈초리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인 농업인을 믿고 그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선거비용과 선거 과열 우려, 대표체계의 정합성 등 우려사항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합장·중앙회장 동시선거 도입 방안, 선거공영제 강화 방안 그다음에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피선거권 요건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직선제의 법적 정합성을 위해서 조합원 지위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막대한 자산과 사업 규모를 가진 조직입니다. 또한 농협은 중앙회, 금융·경제 지주 및 자회사, 지역조합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일수록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농협 내 각종 비위와 불투명한 운영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내부감사와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감사체계로는 권한남용과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견제 없는 자율성은 결국 폐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해야 농협은 더욱 강한 자율성의 토대를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감사위원회를 농협 외부에 설치하는 개혁안에 대해서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반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협은 자율성이 가장 존중되어야 되는 조직이고 관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농협감사위원회를 외부에 설치한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중앙회 외부에 둔다는 것이지 농협이라는 전체의 조직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 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자율성의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회 외부의 감사조직이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장기업 등 많은 기업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고 그러한 감사체계는 공적인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두고 기업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독과 감사는 다른 차원입니다. 감독은 정부가 해당 조직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자율성이 있는 조직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맞게 행동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은 농협이

스스로 신뢰받는 자율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협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 개혁의 최종 목적은 농협이 생산자 조합으로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조합원의 경제활동에도 기여하고 조합원의 후생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은 현재 다양한 여러 측면에서 2차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협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와 현장의 조합원들을 망라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2차 개혁과 별개로 선거제도와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한 1차 개혁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원래의 특성과 달리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가 매우 심각한, 지금 현재 농협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농협중앙회에 대한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농협 기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농협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번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후속 개혁입법 논의가 국회에서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잠깐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고 조합장분들을 비롯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도 다 경청하고 또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 때문에 개혁의 방향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농협이나 농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농협에 대해서 더더욱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민간회사, 은행·증권사를 비롯해서 한 10년을 경험했고 그다음에 학자로서는 지배구조나 이런 여러 연구들을 해 왔고 그다음에 잠깐이지만 금융감독원이라는 조직에서도 감독 업무들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객관적인 제삼자적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농협이라는 조직은 과거 이삼십 년 동안 발전해 왔던 다른 부문의 지배구조나 통제장치와 다르게 매우 발전이 안 된, 그래서 뒤쳐진 곳이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형식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 않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는 곳이 조합원이 주주이자 이용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보다도 훨씬 더 지배구조가 약화돼서 조합원의 이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농협에서 반대하는 의사들을 보면, 발전하는 사회에서 예외 규정을 자기들한테 부여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어서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농협 개혁이라는 것이 적어도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농협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조합원과 농업인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가 농협 개혁을 위해 찬반 대립을 넘어서 더 나은 제도 설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면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선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협의 운영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합장님과 농협 임직원들이 다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협의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여러 입법안을 보면 그 취지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상으로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읽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농협법은 지난 1957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수십 차례 제·개정되었는데 대부분의 농협법 개정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2년마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 3월 10일에도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농협 개혁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 차례의 농협 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는 하향식·타율적 개혁의 한계가 아닐까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농협 개혁 방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합리성이 크게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감사위원회를 독립법인으로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입법안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현행법상 농식품부장관은 농협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따로 감독기관을 신설하지 않고도 농식품부가 의지가 있다면 감독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 감독기관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비용, 일부에서는 한 15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 이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터인데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그 비용을 농협에 부담시키려 한다면 외부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감단체인 농협에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외부감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이므로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외부감독 비용을 농협에 부담시킨다면 결국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지원할 농협의 재원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농협은 농식품부 감독 외에 농협감사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는 중복적인 감독이라고 봅니다. 또한 법적 강제보다는 행정계통체계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통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농협 내부에 두고 운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1110명인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187만 명인 전체 조합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운영에 조합원의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안을 제안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선출방식을 변경하면 부패 방지 등 농협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듯이 추진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됐듯이 교각살우 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려를 새겨들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입법안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경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위배됩니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는 경제활동단체이지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권 회복 또는 민주성 강화 등의 명분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회원조합의 연합단체인 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선출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선거 관리가 복잡해지고 막대한 비용—중앙회 추산으로는 약 400억 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합니다—이 소요될 것입니다. 중앙회장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면 회원조합과 조합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현행법상으로도 경영에 관한 권한, 인사권 등이 거의 없는 중앙회장 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입후보자의 선거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음성적 선거자금 모금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당선된 후에는 논공행상도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농협의 운영이 정치화되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농협 내에 협동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조합원들 간에 분란·갈등·반목이 커질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지역색이 영향을 미치고 임직원 및 조합원 간에 파벌이 발생하며 선거 후유증도 매우 클 것입니다. 농협 임직원들의 특정 후보 뒤에 줄서기의 폐단도 더 커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보자들이 인기영합적인 퍼주기 공약을 남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선출방식을 도입하기만 하면 농협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고 운영이 건전화될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당선자는 세칭 농민 대통령으로 인식되어서 제왕적 권한 남용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무자격 선거권자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크고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수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도 빈발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농협 운영 전반에 불안정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큼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측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헌 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의 법적 지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원조합들의 연합단체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영문 이름도……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진술인.

지금 절반 하셨는데 7분이 가 버렸는데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대로 읽으시면 또 7분 이상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 가지고, 추가로 못하신 내용은 질의 답변 때 할 수 있으니까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선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중앙회의 법적 지위는 회원조합들의 연합단체입니다. 그리고 농협법 제113조는 중앙회의 목적에 대해서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 115조에서는 회원을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또 품목조합연합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법의 기본 구조는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또 중앙회는 회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앙회는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앙회의 운영은 회원 조합장들이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단체법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제21조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결사의 자유는 단체활동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체활동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조합장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중앙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결사의 자유의 주체 그리고 단체활동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합장들 90% 이상이 반대하는 이러한 선거방식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사의 자유 내지는 단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견은 제 개인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헌법학자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맺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읽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말씀하세요.

○진술인 이선신 예.

농협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원인이 제도의 잘못에서 온 것인지 운영의 잘못 또는 사람의 잘못에서 온 것인지를 명확히 진단한 다음에 우리가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법에 의한 개혁은 사실은 최종적인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부는 각종 외부감독기관으로서 행정처분 권한, 행정지도 권한, 행정지시, 시정권고, 시정지시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농협의 건전성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강제규범인 법을 통해서 농협의 건전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협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농협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측면에서 개혁 방안이 논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 진술인들께서 발표할 때, 발제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으면 토론 시간이 줄어 드니까 가능하면 요약해서 7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그냥 읽는 방식보다는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협을 개혁하고자 하는 이 법을 만들에 있어 가지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개혁은 농협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서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200만 조합원이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도 아니고 조합장도, 특정 임직원도 아닙니다.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협의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 구조는 조합원 전체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중앙회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권한이 집중되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의 국정감사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여러 감사를 통해서 취약한 내부통제의 문제, 인사와 경영의 불투명한 문제, 금권선거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문제, 부적절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 문제 등등의 이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국민들과 조합원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자율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존의 불투명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법도 그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은 내부통제와 조합원에 의한 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조직에서의 자율성은 조합원을 위한 자율성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자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때는 국가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임하면 되지만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체성 선언에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은 자기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감사위원회를 독립하는 것이나 정부의 감독권을 보완하는 것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기보다는 무너진 내부통제 장치를 다시금 정상화시키는 조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과장되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거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을 하면 수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거와 별도로 매번 따로따로 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이미 장기적으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번의 선거를 한 번으로 합치기 때문에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단순히 비용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중앙회장은 1100명의 조합장이 선출하고 있는데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회장 선출에 직접 반영되기가 어렵고, 이렇게 소수가 선출하는 구조에서는 금품선거나 조직선거의 유인이 커질 수 있고 이 부분들은 농업계의 기존 선거에서 굉장히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왔습니다.

조합원 직선제는 농협 운영의 축을 조합장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산하에 여러 사업체, 경영체들도 거느리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협동체이고 운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협감사위원회 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중앙회 내부의 감사라든가 조합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감사기구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정비를 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비용을 말하려면 개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 손실도 엄청나게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의 감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 그것은 결국 조합과 조합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용을 조금 들여서 개혁을 하더라도 그 결과로 훨씬 더 많은 구조적인 비리나 모순, 경영 부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경영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줄속 추진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협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과제가 아니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도 농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 왔지만 이미 20~30년 동안 조합원 직선제의 문제, 농협감사위원회의 문제 등등이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들입니다. 농협감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고 조합원 직선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줄속으로 추진된다기보다는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아서 농협 내에서 켜켜이 누적되어 왔

던, 쌓여 왔던 이 문제들을 이번에 개혁입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고 제대로 바꿔 보자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법안이 미처 담보해 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려나 비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하위법령과 중앙회 정관 같은 후속조치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농협을 정부의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을 다시 조합원의 조직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혁입법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더 이상 이 부분이, 그동안 20~3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개혁입법의 계기가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산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진산 안녕하십니까?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이진산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법체계적 정당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체계의 정합성과 기본원리 및 안정성에서 벗어난 개정은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협의 경우에는 그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어 결국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감사위원회 폐지 및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관련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뿐 아니라 신탁법의 적용 대상으로 신탁법은 중앙회의 사업으로 조합에 대한 검사 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회 회원에 대한 검사 권한을 삭제하여 법체계적 비정합성이 발생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농협감사위원회와 별도로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의 중복·비효율 구조가 발생하고, 상호금융업 감독체계에도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 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을 감독하게 규정한 취지는 협동조합은 일반 은행과 달리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개별 법인체이므로 같은 뿌리를 둔 중앙회가 스스로 내부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한 것이며, 각 산업 분야의 특수성에 따른 전문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 행정비용 절감에 따른 효율이 발생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수천 개에 이르는 소규모 조합을 일일이 감독하려면 그에 걸맞는 행정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앙회가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적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및 자회사의 감독에 대한 이중구조 발생으로 업권 별 규제의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 등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농협감사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농협금융에 대한 감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중복감사로 경영 효율성 저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반 주식회사는 외부 회계감사 외에 감사수감 의무가 없으나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 등이 추가적 감사를 받도록 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반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감사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중앙회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을 잠식하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조합에 대한 농협감사위원회의 감사 비용을 중앙회가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 비용의 지출 근거인 사업의 범위에서 ‘회원에 대한 감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에 대한 감사비용이 세무상 손금 불인정되는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회의 조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경우 지도와 감독 분리에 따른 대응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조합 감사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할 경우 사전 예방과 사후적 적발이 물리적·조직적으로 단절되어 정보공유의 지연, 지도와 감사의 시차 발생 등으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이 감사 기획이나 개선 사항으로 즉시 반영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중앙회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임감사 1인을 두는 체계로 변경하는 개정안 관련입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상법에서 도입되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과 공기업에서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2025년 중앙회의 자산은 192조 원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도입기준인 자산규모를 대폭 상회하여 경영감시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1명의 상임감사 제도는 지배구조 선진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미 안착된 위원회 중심의 감사 프로세스를 폐기할 경우 감사업무의 마비와 전문성 단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장관의 감독대상·범위 확대 및 중앙회의 감독권 삭제 관련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을 주식회사로 확대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 권한을 삭제하는 것은 자회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어렵게 합니다. 농협법은 경제사업 및 금융사업을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명시하여 각 지주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 상실은 범농협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중앙회 역할의 위축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지도권과 감독권의 유기적 일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이며, 감독은 그 지침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교정하는 사후적 장치입니다. 지도권과 감독권이 이원화될 경우 업무처리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감독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도권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계장부·서류의 열람·사본발급 청구 기준 조합원 수의 하향 관련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중앙회는 회원 1110개소 중 34개 회원의 요구로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조합은 657개소가 대의원회 최소 운영 기준인 51명 미만의 조합원 동의로 청구권 행

사가 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 농협법의 발급청구 기준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협법의 청구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게 되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등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에 조합의 역량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안의 법체계적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농촌을 위한 농협의 역할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농협법 제1조에 따라 농협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재 공급, 사료가격 인하, 재해 및 금융 지원 등 농업·농촌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근 1142억 원의 유통비 지원 등 서민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협이 농업·농촌 관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심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최근에 실시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이사·감사·대의원에 해당하는 약 8만여 명의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약 33% 정도의 2만 7000여 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농협법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70% 이상 정도 나왔다는 점을 법안심사 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그동안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만—발의된 내용 중에 우리 소위에서…… 그동안 농협이나 중앙회 차원에서 또는 조합장들께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나름대로 소위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발제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규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우리 네 분 진술인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농협법이 참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들 똑같은 말씀은, ‘농협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나 중앙회장이나 조합장이 아니라 농민이고 조합원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몇 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신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17페이지에 이번에 개정안 낸 농협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하시면서, 조합원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지배구조의 이원화라든지 또 실효성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재 농협개혁추진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2차 개혁안과 유사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내용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이선신** 제가 조합원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농협 개혁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20평짜리 집을 지을 때도 밑그림을 미리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밑그림을 여러 번 지웠다 수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추진되는 개혁 방안도 좀 더 넓은 의견수렴과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개혁 방안들이 포함이 되면 회원조합, 농협을 설득하는 데 또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배구조의 이원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유럽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서 전문경영인 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이 논의를 하면 그런 방안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시간에 쫓기듯 이렇게 개혁 방안을 만들면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라든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운영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뭔가 독점적인 구도라는 데에는, 의견이신 거네요. 그렇지요?

○**진술인 이선신** 예,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송옥주 위원** 좀 더 분리가 돼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 원승연 교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농협개혁추진단에서 1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발표를 하고 저희가 개정안에 담아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2차 개혁추진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구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 조합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방안 같은 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개혁추진단 활동을 하고 계신 거지요?

○**진술인 원승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제 생각에는 민감한 부분들을 먼저 건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라든지 지역농협에 도움되는 걸 먼저 접근했으면 이게 수용성도 높기도 하고 효능감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민감한 부분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농협중앙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걱정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2차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협 개혁 방안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술인 원승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단위농협이 제대로 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지배구조와 지역단위농협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기능 중에 대표적인 건 경제사업 활성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협에서 지역단위농협 중심으로 해서 경제사업이 잘 활성화될 것인가 이것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없으시면 제가 여쭙볼게요.

먼저 이선신 이사장님, 지금 ‘농협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 거고

또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뽑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 거다’ 이렇게 했고, 소요되는 비용이 농협감사위원회는 한 1500억 내외가 될 것 같다. 또 선거비용도 한 사오백억 이렇게 드는 것으로 추산을 해서 이게 중앙회나 조합장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소위에서 검토한 내용은 최소한도 조감위나 감사위원회를 묶어서 일단 상위 구조부터 인력을 줄이고 하부 구조도 현재 조감위의 250명 수준을 유지해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금까지 노정된 봐주기 감사나 감사 기능이, 사실상 내부적인 통제가 무력화된 부분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면 훨씬 더 비용은 적게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직 체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동시조합장선거를 하게 되면 조합장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중앙회장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숫자가 많이, 경선을 하더라도 5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선거나 도지사선거 이런 정도 내용으로 추려서 바라볼 수 있어서 단위비용이 훨씬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검토돼서 발제된 내용인가요? 지금 산출 근거가 좀 명확치 않아서…… 저희들이 보건대 그렇게 줄일 수 있을 거다, 개혁을 하면. 감사기구 독립해도 현재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줄여서 운용할 수 있고 한 500억 내외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내용도 한 200억 내외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조합장선거하고 중앙회장선거를 동시에 하게 되면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이선신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회에서 추산하고 있는 소요비용과 정부 측에서 추산하고 있는 소요비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앙회와 정부가 그 기준을 함께 설정해서 접근하면 아마 그 소요 비용의 큰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농협 감사위원회를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일단 사무실 임차비용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전산시설 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수백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고.

또 선거비용도 역시 이 자료에 보면, 정부 측에서 오늘 진술하신 분의 자료에 보면 ‘선거공영제를 통해서 선거비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선거공영제라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일정한 요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공영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 법안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선거비용 보전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입후보자 개인들의 비용은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또 선거운동원을 쓴다든지 이런 데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여기에서 선거자금 모금 등등 관련된 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현행보다 더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어쨌든 그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서 불필요하게…… 좀 정리된 내용으로, 그래서 예전에 정부나 이쪽에서 감안하고 있는 기준과 또 농협중앙회나 이쪽에서 추산하고 있는 기준을 한번 대비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진술하기 전

에 제시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회장 자격과 관련된 내용 하면서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 조합 이게 회원에 의한 지배구조 체계여서 대의 체계에 회원을 대상으로 하면 위배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도 농협법 130조 내용에 보면 중앙회장 자격이, 피선거권은 회원의 조합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진술인 이선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리고 회원의 조합원이 피선거권을 가지면 선거권도, 당연히 회원의 조합원도 선거권이 있어야 피선거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회원의 조합원이 피선거권이 있는데 회원의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소위에서 정합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연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소위 안에서는 입법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회원조합도 중앙회장선거 시에는 회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법적 정합성 문제도 일단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정리까지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이선신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를 회원으로 하려면 일치시켜서 회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거 1988년도에 운영되던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임명제를 선출제로 바꿀 때—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바꿨지요—그때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을 조합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1000여 명 정도이고 또 중앙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조합원으로 넓혀야 보다 많은 인재와 또 좋은 합리적 경영자를 중앙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게 보장해 주는 것이 농협법 취지에 부합한다 이런 취지에서 입후보 자격을 조합원으로 넓게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미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합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주 단위로 연합되는 건데, 거기서 역시 선거인단 제도를 각 주별로 운영해 가지고 하는데 독특한 방식이긴 합니다마는 미국도 연합국가이지만 주지사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반드시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고 입법정책적 고려하에서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입법정책 사항인데 오히려 입법정책 사항이 꼭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들을 하셔서 그 부분을 환기시켜 드렸고요.

특히 헌법재판소 2018헌바85 내용 보면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제한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현재 판결도 있어서 중앙회장의 자격과 관련된, 특히 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현재 회원의 조합원으로 확대시키는 문제가 헌법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어떤 의견이신지를 여쭙어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 이선신 저는 한말씀 덧붙이면 선거권에 관한 내용과 피선거권에 관한 내용은 분리해서 서로 다른 케이스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입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이선신** 입법적인 내용에 동의하는데, 피선거권 부분은 그렇지만 선거권은…… 단체라는 것은 그 구성원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중앙회의 구성원은 회원조합이거든요. 회원조합이 만든 연합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중앙회의 운영 원리에 합당하고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이지만 중앙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중앙회 임원 선출의 권한을 갖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원래 내용은, 피선거권은 선거권 중의 일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연계해서 되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 정도 하시고요.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원승연 교수님,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협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차 개혁과 관련해서 경제사업과 관련된 개혁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농업과 농협만의 특수성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안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좋은 개혁안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삼자적 시각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형식적 책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들, 중앙회장 권한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선신 이사장님께서 제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에도 농식품부장관이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농협법을 분석했을 때 과연 제도가 없어서, 지금 농협의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그 의제들이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별도의 감사위원회하고 전 조합원 직선 이렇게 물고 가는 것도 저는 위험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리 예정이다, 입법정책 사안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 법체계 전반에 충돌하는 문제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이것 조금 더 체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 21조 결사의 자유 침해 그리고 자조조직 자율성 침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농협 개혁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로 회부될 경우—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경우 그때 올 혼란이 건잡을 수 없게 되면 그 책임성도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개혁 입법을 밖에서 주도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관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과 관련해서 조합 선진국의 사례, 직선제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었는데 농림부 차원에서도 별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선신 이사장님께서 제도의 잘못인지 운영의 잘못인지 사람의 잘못인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 면밀하게 정리를 한번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 주시면…… 개혁 입법 당연히 추진해야 되지요. 그런데 실수 없이 해야 되니까 또 제도의 충돌 없이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술인 이선신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진술인 원승연 제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나요?

○문대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원승연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추진단에 있는 분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 게 분명하고요. 많은 각종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또 변호사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희가 개혁안을 냈을 때는 법적인 사안 그다음에 다른 법과의 충돌 이런 모든 가능성을 사실은 낱알이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장경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이 사안이 한 이삼십여 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잘 고쳐서 그걸…… 제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잘 고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것도 항상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지는 않고 현재의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면밀하게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혁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법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단순한 절차적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법체계 전반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들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요.

○진술인 원승연 예,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 한번 쭉, 한 일고여덟 가지가 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 보십시오.

○진술인 원승연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가……

○문대림 위원 저도 농협법 개혁안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이니깐요. 그렇게 하십시오.

○진술인 원승연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문금주 위원 저는 한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산 국장님, 발제해 주신 페이지 보면 38페이지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농식품부장관 추천위원 1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추천위원을 직접 추천하는 것은 민간 조직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헌법 조항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입법권의 문제일 것 같은데 헌법 위배까지 말씀하신 것은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가요?

○진술인 이진산 헌법까지 얘기한 것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그러하지 않은 민간 조직의 인사추

천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수협과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업권 간의, 협동조합 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정부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사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인데 그 부분까지 인사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술인 이진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다수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관련해서, 제가 연계해서 좀 여쭙볼게요.

지금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수협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니 나름대로 추천하는 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농협의 경우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호 장치, 지원 정책, 공익적 수단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이진산**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정부가 직간접 추천을 현재 하고 있고 또 농협의 경우에도 공익적인 법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무관청인 농식품부장관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또 조감위와 관련된 내용도 정부, 농식품부장관의 감독권 위탁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방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진술인 이진산**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는 포괄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포괄적 감독권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간 조직 또는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자율성과 운영의 발전을 잘 돕는 것이 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온다면 포괄적 감독권자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겠느냐, 그 구성원들과 사회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어서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진술인 이진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만 하나만 더 첨언하면 인사추천위원회가 소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면 이러한 입법적인 필요성이 없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추천위원회가 형식화되고 사실상 내정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도 누군가는 공적인 영역에서 소금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도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것이지 인사추천위원회를 형해화하거나 관치화하거나 이런 의도가 입법자들의 의도는 아니다 하는 점을 좀 환기시켜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진산 국장님, 제가 진술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농협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선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농민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전제에 대한 동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논의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진술 중에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칠십여 %가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다 의견을 물은 건지 아니면 특정한 내용, 예를 들면 중앙회장의 직선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보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농민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상당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조합이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큼니다. 그러니까 경제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융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금융사업에서는 부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자기자본을 다 깎아 먹는 형태로 조합이 운영되다 보니 정말 조합이 조합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진술 내용 중에도 상호금융업 감독 체계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진술을 해 주셨는데 상호금융업이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아울러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상호금융업에 대한 내용 이것 답변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진술인 이진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농·축협 이사·감사 및 대의원 전수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농협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에 반대가 77.3%, 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권 삭제 및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 반대가 76.8%,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가 68%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률은 33.3%고 2만 7347명이 참여했다, 이런 전수조사 결과를…… 최근에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감사와 대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지요?

○진술인 이진산 예, 그렇습니다. 8만 명 대상……

○임미애 위원 조합원이 아닌 거지요?

○진술인 이진산 아니요, 이분들도 조합원이지요. 조합원 중에서……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농민 조합원. 지금은 사실 임원들이잖아요?

○진술인 이진산 임원하고 대의원……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치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농민, 그러니까 농업 관련 전문지 신문에서 여론조사 나왔던 것은 혹시 살펴보셨나요?

○진술인 이진산 예, 살펴보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조사 결과거든요.

○진술인 이진산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직접 설문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 그때 여

론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 방식의 설문조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어느 것이 농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 자료, 두 조사의 신뢰도에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이진산 설문조사했던 설문지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자세하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상호금융업에 대해서는요.

○진술인 이진산 상호금융업 감독권 체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은행은 법인이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은 전국에 많은 점포가 있지만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행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감독이 원활한 측면이 있고요. 상호금융업,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이런 수천 개가 되는 협동조합은 각각 개별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의 총회와 이사회 이런 개별 의사결정 기구를 갖고 있고요. 그 개별 법인체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같은 정부 감독기구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감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회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뿐만이 아니고 지도하고 지도에 필요한 규정 제정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권만 별도로 각종 업무 방법이라든지 금융 소비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관할하는 이런 모든 규정들을 제정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사만 떼어 내게 된다면 지도와 감사의 그런 유기적인 연관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감사·감독의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일반은행과는 다른 그런 상호금융업권의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개별 법인체로 있는 상호금융에서 중앙회의 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술인 이진산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의 감독권이 충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감독 장관이 다 다른데요.

○임미애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중앙회가 개별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술인 이진산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왜 다시 농림부가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나요?

○진술인 이진산 그 위에 포괄적인 감독을 정부가 하고요. 그 밑에는 중앙회를 통해서……

○임미애 위원 아니, 저는 정부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그동안 제대로 작동시켰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묻는 겁니다.

○**진술인 이진산** 사실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성장을 보면 지금 상호금융업권,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표로서 보통 금융업을 하는데요. 예금이 라든가 대출의 성장률이나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바 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연체율이라든가 금융 리스크에 노출된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러한 부분들 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이러한 상호금융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포괄적인 금융감독 당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 도·감독해 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지금 오신 지위가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님이신데 중앙회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농민 조합원들한테서는 빗발치는 원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러면 수렴 하고 개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아서 그 점은 매우 아쉽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아까 이선신 이사장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이진산** 제가 생각할 때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구성원들한테 자의권이라든가 공익권이라든가 다양한 권리·의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의결권과 선 거권이고 또 예를 들면 우선출자자나 주식회사에서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주지 않고 출자 권한만 주고 배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한 계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피선거권도 그런 본질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결권·선거권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에서 포함될 수 있기 때문 에 입법적 선택에 의해 가지고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과 선거권은 아까 단체활동이라든지 이런 가장 본질적인 권한 부분까지 외부에 허용하거나 이러한 사례는 잘 보기 힘들고 그래서 아마 헌법상 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현재의 법체계를 놓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답변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문제를 보 면 선거권은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피선거권은 그보다는 엄격한 자격 요건들을 보통 부여합니다, 공직선거일 때도 그렇고 조합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뒤집어진 경우지요. 농협중앙회법 보면 피선거권에 있어서는 보 편성을 줍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데 선거권은 극히 제한을 둡니다. 1110명의 조합장에게 줍니다. 이 체계가 오히려 일반적인 선거권과 피선 거권을 논의할 때 서로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진술인 이진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는 1단계 조직 과 2단계 조직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협중앙회나 수협중 앙회나 각 협동조합 중앙회나 연합회들은 1단계의 회원조합, 그다음 2단계 조직입니다.

그래서 2단계 조직의 특성상 2단계 조직을 구성하는 회원들의 그런 부분들이 의사의 기본이 돼야 되는 이런 게 기본적인 단체법의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정하시나요? 피선거권은 ‘모든 조합원에게’라는 걸로 보장이 되었지만 실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 그러니까 회원조합의 조합장 출신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나요?

○진술인 이진산 지금 회원조합장들이라는 것은 중앙회를 구성하는 회원의 대표자인 것이거든요. 이 대표자들은 결국은 1차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직선제로 선출된 분들입니다. 특히 지난번 법 개정에서 국회에서 기존의 농업협동조합 선거를 간선제로 하던 모든 부분을 직선제로 이렇게 다 일원화시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조합원의 의사를 좀 더 확고히 반영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2단계 중앙회, 2단계 연합회에 가서 표현을 하라는 입법적 결단을 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조합장들이 그러한 조합원의 민의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충실히 잘 반영을 하는 그런 중앙회 구성·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자격은 조합원이라고 열어 놔지만 출마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 회원조합장들이고 그러다 보니 조합장 중심의 선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지역 입장에서 지역조합장들은 워낙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사회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상황에서 조합 직원 출신들이 조합장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게 연쇄적인 구조로 회원조합은 직원 출신의 조합장을 배출하게 되고 직원 출신의 조합장이 다시 중앙회장 출마 자격을 갖게 되고 실제로 당선도 그렇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조합원들의 다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중앙회가 명실상부한 조합원들의 대표 조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진술인 이진산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제가 같은 내용 하나 여쭙볼게요.

상호금융과 관련해서 중앙회가 일반 조합을 지도·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셨잖아요? 엄격하게 보면 지금 중앙회의 논리대로라면 일반 지역조합은 독립법인이지요?

○진술인 이진산 예.

○소위원장 윤준병 중앙회의 출자자이고 또 중앙회에 대한 감시 주체인 지역조합을 중앙회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진술인 이진산 사실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중앙회나 연합회를 회원조합들이 출자해서 이렇게 한 것은 그 안의 지도라든가 감사도 일종의 회원에 대한 다른 차원의 서비스, 회원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감독권이 부여된 내용은 원래 단체조직 체계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고 농식품부장관이 일반 중앙회뿐만이 아니고 지역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하면서 발생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감위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감위 신설 때 중앙회장이 감독권을 위탁해서, 130조 3항인가 여기에 근거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중앙회 논리는 이것 끼웠다가 저것 끼웠다가 해서 오히려 정합성이 더 안 맞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지역조합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회는 조합원들의 감시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역으로 아무 권한도 없이 ‘우리 감독권 뺏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권한은 단체의 조직적인 내용이 아니고, 상호 협동조합적인 법리에 의해서 생성된 게 아니고 주무관청인 농식품부장관의 감독권을 중앙회에다 위탁하고, 위탁하는 내용이 조감위를 만들면서 위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에 의해서 지금 조감위가, 일반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조합감사위원회가 농식품부장관의 감독권을 대행하면서, 위탁 받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식품부장관이 위탁했던 권한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독립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정합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이걸 뺏어 가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다른 내용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진술인 이진산** 농협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조합감사위원회 설치 전에도 과거에 중앙회에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권과 지도에 필요한 규정 제정권을 줬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도권은 있었어요, 지도권은.

○**진술인 이진산** 예, 규정 제정권이 지금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그 지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 규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농림부장관의 권한이 물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일부 위탁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상호금융업권의 감독 체계 말씀드렸을 때 수많은 수천 개의 개별 법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권한을 다 행사하기 어려우니 중앙회에 위탁한 부분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지도·감사에 대한 규정이 있던 상태에서…… 그리고 감독권과 지도·감독권의 차이점은, 장관의 감독권은 직접적인 업무정지 행정처분 이런 부분을 직접 할 수 있지만 중앙회는 그것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회는 일단 일차적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징계양정에 따라서 문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감독권처럼 직접적인 그런 행정처분을 해서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회에도 그러그러한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장관에게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독권과 구분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혼자 주장인 거고요.

전종덕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질문이 다 되었는지 어땠는지를 몰라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심의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12시 넘었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알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꼭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신 안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회의소법을 오늘 의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전종덕 위원 농협법을 마저 하시지요, 농협법 심사를 하시지요. 그래야 연관성이 더 있으신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쉽지 않으세요?

○문대림 위원 나는 회의소법이 국정과제에 올라온 게…… 아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소위원장 윤준병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송옥주 위원 정회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13. 농어업회의소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14.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15. 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5)

16. 농어업회의소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2)

17. 농어업회의소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18. 농어업회의소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8)

(12시08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소위 자료의 1페이지·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7건의 제정안이 제안이 돼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후에 정부로 이송이 되었으나 재의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7건의 법률안 중 문금주 의원님 안은 21대 국회에서 의결해서 재의요구된 법률안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의 윤준병 의원님 안이 정부가 최근에 관련 농어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총괄 검토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번 제명은 대개 의원님들이 농어업회의소법안이라는 제명을 가지고 계시고 안호영 의원님 안만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인데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농어업회의소법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의 목적에 대해서도 제정안마다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계시지만 이 내용은 의결 내용에 따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정의에 관한 사안도 7건의 제정안 모두 21대 국회 의결안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정안이 약간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윤준병 의원안만 농어업회의소가 의견 수렴을 통한 자문·건의하는 기구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윤준병 의원안의 일부 용어를 정리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의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도 제정안들이 윤준병 의원님 안을 빼고는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 주체에서 국가를 빼고 지방자치단체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정안마다 상호 협력관계 구축 의무라든지 또 공공기관 협력 의무 등 이런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먼저 16쪽의 제명은 농어업회의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문금주·신정훈·안호영·임미애·윤준병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농어업회의소의 정의를 기초·광역·전국 단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같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고 또한 수석전문위원 수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21쪽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문금주 위원 차관님, 어찌 됐든 정부는 이번에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했을 때 농업인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그간 농업인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전종덕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상 충분히 검토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요지와 이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 내용을 조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계서 좀 설명을 해 드리세요. 예전에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내용과 전주어서 농민단체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했던 내용이, 중앙의 조직을 두어서 농어업회의소의 중앙 조직이 농민단체들의 활동 영역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담은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 설명을 잘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난번에 농업인단체에서 주로 했던 것들이, 첫 번째는 농업인단체가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 농어업회의소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국 단위의 다양한 농업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전국 단위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은 관변단체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관변단체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그때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항에서는 정부의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삭제하고 정치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 두 가지가 전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반대했던 농업인단체하고 대화를 나눠 보셨을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여러 차례……

○전종덕 위원 그 정도면 농업인단체도 반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3쪽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적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5쪽에 보면 21대에는 농축산연합회에서 반대를 한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반대 안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금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정돼야 되는 목적, 취지 이런 부분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기존의 농업인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농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다양한 역할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지역,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

는 기능 그리고 일부 특정 농업인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농지조사라든가 이런 공익적 기능을 주려고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걸 법인 성격의 단체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정부조직과 이 농어업회의소의 관계랄까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정부조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기능은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렸습시다만 지역 농정에 자문·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십몇 년간 시범 운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그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 성과 분석…… 그러니까 자율적 운영을 통한 모범적 사례, 그래서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서 이러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으면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이러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서 농림부 차원에서 이걸 국정과제에 넣고—물론 앞순위는 아닙니다마는—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전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동조했다가 이번에는 따라가는 것인지, 지금까지 농업인의 공식 대의기구로서의 농어업회의소라는 이 기구를 만들어서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농림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지 그게 저는 헛갈려요, 좀 생소한 측면도 있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운영해 본 바에 대한, 자율적 운영…… 예산 지원도 잘 안 받았던 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중앙의 차원에는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들이 지원됐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의 공식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지난 14년 동안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모범적 운영 사례, 그 운영 사례를 통한 대한민국 농정의 긍정적 전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봤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지역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에는 회원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정책 건의를 한 1600건 정도 해서 500건 정도가 정책에 반영됐다는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강원도 평창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참여율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체적으로 한…… 참여율은 많이 다름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참여를 한 것이 34% 정도 농업인이……

○**문대림 위원** 평균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평균은 8% 정도 됩니다.

○**문대림 위원** 8%?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됐습니까?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지금 농업인들의 자문기구로, 의견 청취 기구로 이걸 두겠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농업인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다른 농업인단체하고의 중복,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자칫 이게 법적 기구로서 독점화 그리고 또 관변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마는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려하고 있는 내용이나…….

저는 자체 기구로서 충분히 농업인들의 자문과 의견 청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법적 기구로까지 만들면서 다른 단체와의 차이, 차별 또는 독점 이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기존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이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중앙 조직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체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여러 단체들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일단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은 농어업회의소에 특별회원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굉장히 농어업회의소가 활발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회의소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쇠퇴를 많이 하고 유명무실하게 돌아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4개소는 운영조차도 안 되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려고 생각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농어업회의소를 처음 시작한 때가 2010년도 초반이었어요. 그때 할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드리면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에서 바라보는 농어업회의소는 그간 정부에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위축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법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한다면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됐습니까?

다음.

○전종덕 위원 농어업회의소 안 만들면 하시고자 하는 것 못 해요?

○문대림 위원 왜 만드는 거지요?

○전종덕 위원 왜 만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문대림 위원 평창에서 정책건의가 아까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올라온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를 한번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주셔도 좋고요. 아까 몇 건의 정책건의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674건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546건의 정책건의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546건의 정책건의, 그것이 반영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일단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자료가 취합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번 확인해서 저희 방으로 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사실 반영이 잘 안 돼서 법에다가 법적 지위를 보장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건의가 올라가면 일정한 시간 내에 답변을 주도록 법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담은 겁니다. 건의가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반영이 안 되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입법에 대한 당위성,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계신데 예전에 처음에 이 법 만들 때는 우리가 약자인 농어업인들 이쪽에 법적인 조지를 좀 만들어야 소상공인이나 이런 단체처럼 약자에 대한 대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입법의 필요성 뭐 이런 게 됐고, 그동안에 준비해 왔으니까 입법화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농민단체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보호해야 될, 농업인들의 이익 대변을 하는 농민단체들이 본인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반대의견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의견 조율이 돼서 입법안을 만들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6페이지의 5번 법인격 등에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인격, 주소, 지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고요.

다음에 28페이지의 농어업회의소 명칭에 관한 규정은 농어업회의소의 명칭에 관할 행정구역의 명칭을 기초 및 광역의 경우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윤준병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기초단위에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다른 제정안에서는 전국 단위의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이러한 전국 단위 조직 없이,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제정안의 경우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수정의견은 윤준병 의원님 안의 내용을 일부 명확히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의 7번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7건의 제정안 모두 정책 과정 참여 등 일곱 가지 업무를 비교적 유사하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만 국가 위탁업무를 빼고 지자체 위탁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또 임미애 의원님과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 농어민의 권익보장 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의 8번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약간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강승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5건의 제정안은 특정 정당의 지지뿐만 아니라 반대까지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농어업회의소를 이용한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금지하면서 농어업회의소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의 9번 농어업회의소 관할구역에 관해서는 7건의 제정안 모두 기초와 광역 등 일정한 계층적 구조로 농어업회의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강승규 의원님하고 윤준병 의원님 안이 나머지 5건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건의 제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관외 경작자가 많고 농업인의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서 자치구를 통합해서 1개의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강승규 의원님 안은 이러한 고려 없이 단순히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되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도 각각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전종덕 위원 이 법안이 민생법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시작을 하셨으니까 일회독 정도로 끝내고 차기에 이것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한번 일회독 하시고 판단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이 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6쪽, 법인격 등입니다.

지회의 설치는 기초·광역에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농업과 어업은 서로 다른 산업 분야로 정책적 수요가 상이하므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업무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 증진을 위한 업무를 명시하고 기존 농어업인단체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영리 목적의 사업은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정치적 중립 등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임원·대의원 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의 관할구역은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44페이지의 10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요건 중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동의·인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44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인가권자의 경우 나머지 제정안들은 농림식품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을 인가권자로 하고 있는데 윤준병 의원님 안만 시·도지사를 인가권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가 시 협의 규정도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초어업회의소를 별도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제정안 중 인가 시 해수부장관 및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물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임업이나 어업 관련도가 낮은 지역이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번거로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기초어업회의소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어업회의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기존 농어업회의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요건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같이 기초어업회의소를 개별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경우 어업인 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그 설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의 광역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규정도 역시 설립에 필요한 발기·동의·인가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이 다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논의하신 기초농어업회의소 관련 내용을 참고하셔서 일관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5페이지의 전국농어업회의소 관련 규정은 개정안마다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참고로 윤준병 의원님 안은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즉 전국 단위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44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요건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설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의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광역 단위 유사 단체의 설립 요건 등을 고려하여 광역농어업회의소가 기초농어업회의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중된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8페이지의 11번 정관, 설립등기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7건의 개정안이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설립·변경 등기 시 문금주·여기구·신정훈·임미애·안호영 의원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를 또 윤준병 의원님 안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의 12번 회원에 관한 규정 중 회원자격에 관한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마다 내용이 다소 상이한데 68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듯이 일반회원의 자격은 대체로 유사합니다만 기초회의소의 경우 농지·어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다른 제정안과 달리 윤준병 의원님 안은 사업장 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만이 회원이 되도록 하여 사업장 등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회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원의 경우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초회의소 특별회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있고 광역회의소 특별회원으로 이중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고 있는데 다른 조합들도 특별회원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국회의소의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유사합니다만 윤준병 의원님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회의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윤준병 의원안을 중심으로 71페이지부터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제정안은 상공회의소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7페이지의 회원의 탈퇴, 제명, 권리제한에 관한 제정안도 대체로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피성년 후견인을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공회의소법에서는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조합법에서는 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입법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명 및 권리제한 사유에 있어서 윤준병 의원님과 강승규 의원님 안은 정관으로 정한 금지행위만을 사유로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제정안의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금지행위도 제명 및 권리제한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정한 금지행위를 제명 및 권리제한 사유로 할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심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3페이지의 회원대장에 관한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가 회원대장을 작성·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또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의 중단에서 보시듯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인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렵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제정안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58쪽입니다.

정관, 설립등기 및 해산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총회를 두고 회장의 선출 방식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직선 또는 간선의 방식으로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회원 관련 사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사업장 등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농업인들도 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회원이입, 권리 및 의무는 윤준병 의원님 안, 문금주 의원님 안, 어기구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위반할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탈퇴, 제명과 권리제한입니다. 제명 또는 권리제한의 사유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법령으로 정한 금지행위는 포괄적이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여러 의원님들 안과 같이 정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회원대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적용되므로 별도의 규정 실익이 없어 현재 발의한 문금주·어기구·신정훈·임미애·윤준병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68쪽의 회원자격에서 이게 농림어업인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님 안은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빼고 그냥 사업장 소재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농업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임미애 위원 사업장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농림어업인 이렇게 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거주하는 곳은 A군인데……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주하는 곳 기준이 없으면 기초회의소의 회원자격은 농림어업인 이렇게 되냐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금주 위원의 강압에 의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 법안이 한 번 거부권 정국을 거친 그런 법안이기도 하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좀 완성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오늘 소위 통과가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소위원장 윤준병 소위 통과는 부담이 안 되는데요.

○문대림 위원 저희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빨리 회의를 정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위원님들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어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소위 자료 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총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96페이지의 총회에 관한 제정안은 윤준병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초회의소에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고 사업계획, 해산, 회원의 제명, 선거에 관한 사항, 회장·대의원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의원님 안은 총회를 두면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주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농어업회의소의 해산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정안은 총회에 대한 규정이 없고 대의원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대의원총회에 관한 제정안은 대의원총회의 구성, 소집 절차 또 대의원총회의 회장 및 의결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강승규 의원님 안이 약간 좀 다르고 나머지 제정안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에 총회 의결사항인 해산에 관한 사항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내용은 7건의 제정안 모두 일반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해임, 해산, 제명에 관한 특별정족수 규정에 의해서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강승규 의원님 안은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특별정족수로 하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특별정족수로 하는 등 다른 제정안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총회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정족수 의결사항이 다른 제정안과 내용이 다릅니다.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특별정족수가 아닌 일반정족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 위탁업무 수탁 여부에 관한 사항이 특별의결정족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의 대의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도 7건의 제정안 모두 기초회의소의 정원에 대해서는 100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및 청년의 할당기준 등 대의원을 구성하는 기준은 다소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금주·신정훈·안호영·강승규 의원님 안은 기초 일반대의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구 의원안은 분야별·품목별·세대별·성별 참여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미애·윤준병 의원안은 30% 이상은 여성으로 또 20% 이상은 청년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대의원의 선거 및 임기에 관한 제정안은 7건의 제정안 모두 기초회의소의 일반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의 선출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은 동일합니다마는 임기와 연임 제한에 있어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고 신정훈 의원님 안의 경우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대의원은 1차에 한하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른 제정안과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광역회의소에 대해서도 신정훈 의원안은 대의원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의 대의원 자격제한에 관한 제정안은 강승규 의원안에는 없는 내용이고 윤준병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제정안이 21대 의결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일반대의원에 대해서만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대의원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이러한 자격제한이 자연인인 일반대의원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의 대의원 해임에 관한 제정안은 대의원의 해임에 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승규 의원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임요구를 하도록 한 다른 제정안과 달리 그 요건을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윤준병 의원안

의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뿐만 아니라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승규 의원안과 윤준병 의원안은 앞서 말씀드린 회원 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해임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의 특별회원 및 특별대의원의 대표자에 관한 내용은 특별회원 및 특별대의원의 경우 그 실체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윤준병 의원안과 강승규 의원안이 나머지 5건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과 강승규 의원안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 및 단체대의원의 대표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광역·전국회의소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윤준병 의원안이나 강승규 의원안과 같이 준용 규정을 통해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96쪽입니다. 대의원총회 등 사항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같이 기초농어업회의소에 회원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총회를 신설하여 전체 농업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대의원총회 부분입니다.

25조에 전체 회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총회를 신설하고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총회를 두는 윤준병 의원안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대의원총회의 의사입니다.

총회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총회에서도 준용하는 윤준병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는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대의원 정수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같이 여성·청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121쪽입니다. 대의원의 선거 및 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농어업회의소에서도 3년이고 상공회의소도 3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 사례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대의원의 임기, 연임 제한 등을 정한 윤준병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대의원의 자격제한입니다.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고 대의원 자격제한에 대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일반대의원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의원의 자격제한은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준병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대의원의 해임입니다.

대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윤준병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특별회원·특별대의원의 대표자입니다.

단체회원·단체대의원의 대표자 선정과 결격사유 규정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인 78쪽의 회원가입, 권리 및 의무 부분에서 문금주·여기구 의원님 안을 같이 수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문금주·여기구·신정훈·안호영·임미애 의원님 안은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조문이라든가 인용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의원 연임제한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호선 위원 농어업회의소가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는지 제가 유사 사례를 잘 몰라서…… 대의원 연임이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1차 연임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데를 봐서 1차 연임 정도는 풀어 줘도, 연임을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는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한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제한을 안 하는 겁니다.

○임호선 위원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윤준병 의원님 안은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임호선 위원 연임은 계속하실 수 있게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연임이 안 되는 걸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39페이지의 집행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원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제정안은 강승규 의원님 안, 윤준병 의원님 안, 신정훈 의원님 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제정안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정안 모두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감사를 두도록 하고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강승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이사, 나머지 제정안은 상임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경우 문금주·여기구·안호영·임미애·신정훈 의원안이 일반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승규 의원안이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중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대의원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특별대의원의 대표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임기는 문금주·여기구·안호영·임미애·신정훈 의원안이 4년으로서 연임제한이 없고 윤준병 의원안은 3년으로서 회장의 경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정훈 의

원안은 임기가 2년으로서 임원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임기 4년에 광역 및 전국 회의소 회장은 1회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의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한 제정안은 대의원 또는 특별대의원에서 면직된 경우를 당연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안과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인·단체 대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에서 퇴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당연퇴임 사유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임요구에 관해서는 윤준병 의원안과 강승규 의원안을 제외한 5건의 제정안이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외에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도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절차에 관해서는 대의원총회 10일 전까지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윤준병 의원안과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해임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4페이지의 상임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한 제정안은 7건의 제정안 모두 표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윤준병 의원안과 강승규 의원안은 의결기구의 명칭을 이사회로 하고 구성원을 이사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제정안은 의결기구의 명칭을 상임위원회라고 하고 구성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의 사무국에 관한 내용도 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강승규 의원안만 전국회의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명명한 것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의 15번 제정에 관한 사안 중 가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여기구 의원안과 안호영 의원안은 추가로 컨설팅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윤준병 의원안은 경비 지원의 주체는 국가를 빼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컨설팅 및 교육 홍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의 나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제정안은 21대 국회 의결안에 없는 내용으로서 안호영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의 회의소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공회의소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어업 산업 규모 등을 감안해서 달리 정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의 다번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역시 21대 국회 의결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강승규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으로서 농어업회의소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공회의소법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윤준병 의원안에서 총회 의결사항에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등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39쪽입니다. 집행기구, 임원·상임위원회·사무국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회장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숫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윤준병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유사 입법례 및 유사 단체 규정 등을 고려하여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되 상임위 수정의견과 같이 단체대의원 대표자의 퇴임 등을 기초농어업회의소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로 추가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경우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명칭 및 구성원 의결정족수 등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이사회, 이사로 하고 기존 농어업회의소 및 농협, 수협, 협동조합 등의 사례를 고려하여 소집·의결·의결사항 내용의 수정을 반영한 윤준병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9쪽입니다. 사무국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명칭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사무국으로 결정한 윤준병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운영·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간접적인 지원은 관변화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에서는 그 사항만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관련 설치·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윤준병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입니다.

이는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영리목적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지도·감독 조항을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검사가 가능하므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 곤란합니다.

166쪽입니다.

총회 의결사항으로 사업계획과 예·결산의 승인 규정을 두고 있어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 161쪽의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지원이 가능토록 법안을 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걸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관련해서 지자체라고 얘기하면 도 기관은 도 또 시군에 만들어진 회의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텐데 이런

게 되면, 실제로 지자체가 전적으로 의무를 져야 되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차별이나 내지는 회의소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의무도 아니잖아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법은 있으나 회의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아시듯이 이 조항이 그동안 굉장히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지원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농어민단체들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설립과 관련된 사항의 경영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161쪽의 검토의견에 보면, 차관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구로서의 성격이 퇴색할 수 있어서 국가가 지원을 못 해 준다, 안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정부는 예산 지원은 못 해 주겠으니 지자체한테 손을 벌려서 하라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지자체만 피곤해지는 거지요. 차라리 지원 여부를 조례로 맡겨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국가는 의무에서 빠지면서 왜 지자체한테 이것 의무화를, 의무화는 아니지만 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두느냐 이거지요.

여기 상공회의소법 유사 입법례도 보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설치·운영에 관한, 이것은 운영비까지 다 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걸 앞뒤가 안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지자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국에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지자체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적게 하는데, 현재 지자체 자율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근거만 두지 지자체한테 할 수 있게끔 아예 법으로 근거 조항을 만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할 때 기획예산처가 반대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처도 반대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미애 위원** 농민단체도 반대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농민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게 이유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사업으로 거둬들인 것과 그다음에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기존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는 조항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정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고요. 문금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68페이지의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통제 부분입니다.

가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제정안으로서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법률 및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금주·여기구·신정훈·안호영·임미애 의원님 안은 농어업회의소가 업무와 회계 관련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농림식품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승규 의원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포괄성 측면에서 시정명령을 포함한 5건의 제정안 내용이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 임원의 위법행위만 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인인 회의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1대 국회 의결안은 문금주·신정훈·임미애 의원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제정안은 농림식품부장관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와 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제정안은 설립인가 취소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취소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호영 의원안은 협의 및 통지 대상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농림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를 설립인가 취소 주체로 하고 있고 광역회의소의 인가 취소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윤준병 의원안을 중심으로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페이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회의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금주·여기구·신정훈·임미애 의원님 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을 지도·감독의 주체로 하고 있으며 안호영 의원안은 여기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정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전국농어업회의소와 기초 및 광역 회의소를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도·감독의 주체로 농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의소가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지도·감독 규정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이고 농어업회의소 내부의 지도·감독 관계는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도 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의 보고 의무에 관한 제정안은 21대 국회 의결안에 없던 내용으로 강

승규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68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통제입니다.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는 농어업회의소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유사 입법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규정을 둔 윤준병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권한은 설립인가권자, 광역은 장관, 기초는 광역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임위 수정안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도·감독 조항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설립인가권자에게 부여돼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준병 의원안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82쪽입니다. 보고 의무입니다.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설립하는 기구임을 고려할 때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별도로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차관님, 지금 전국은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역은 누가 설립합니까? 장관이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허가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시·도지사……

○문금주 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뭐냐 하면 설립은 시·도지사에게 맡겨 놓고 돈도 안 준다고 해 놓고 지도·감독까지는 장관이 다 하고 싶어 하고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돈도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도·감독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거냐 이 말이지요. 저는 설립해 준 주체한테 필요하면 지도·감독도 하도록 하고 농림부는 빠져야 된다고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기초는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자가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리고 광역은 장관이 인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광역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전국은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어찌 됐든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84페이지의 사용료에 관한 제정안은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문금주·여기구·신정훈·안호영·임미애 의원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징수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수익사업 확장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반면 강승규 의원안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윤준병 의원안은 시설 사용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용료·수수료의 징수를 가능하도록 하여 회의소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 재원을 조달하게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내용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선 사안들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 민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89페이지,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제정안은 여기구·강승규·윤준병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농림어업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규정에 비해 오히려 그 처벌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농어업회의소 임원 또는 대의원 당선 관련 선거운동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회의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여기구 의원안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윤준병 의원안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중 시행일은 6건의 제정안 모두 공포 후 1년을 경과한 날로 하고 있고 경과조치에 관해서는 기존 농어업회의소도 제정안에 규정된 설립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여기구 의원안 및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1년 또는 2년의 기한을 두고 설립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7페이지는 수정의견을 일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84쪽,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자체 재원 확보로 자율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윤준병 의원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권한의 위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된 윤준병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민법의 준용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미비를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입법조치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190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의 관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등이 되지 않도록 유사 사례 대비 강한 수준의 벌칙을 규정한 윤준병 의원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부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농어업회의소가 제정안에 따른 농어업회의소로 전환을 장기간 미뤄 법체계가 혼재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되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완료된 이후 설립인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준병 의원안처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보는 법안이어서, 이것 기본적으로 통합 설계를 한 이유가 뭐지요? 농업 분야하고 수산 분야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서 농어업회의소로 간 이유가 뭐지요? 재산권 체계가 다르고 담당 부처가 다르고 이해관계인이 다르고 산업 구조도 다르고 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소관하는 단체가 될 텐데 수산업과 관련해서 저는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녹여 내려고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해수부하고 기본적으로 의견 교환을 했고요.

○문대림 위원 의견 교환한 내용, 어떤 쟁점을 갖고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 그걸 좀 정리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업인들은 농업인에 비해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자문이나 건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기초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숫자가 적어서 같이 할 경우……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기초 단위나 광역 단위에서 어업회의소나 농업회의소를 분리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지금 기초는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초는 분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설립 기준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설립 기준도 기본적으로 숫자가 좀 적으시기 때문에 발기인 할 때도 별도로 예외 조항을 두는 걸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발기인을……

○문대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업회의소 형태로 따로 요구가 있었던 게 있나요? 그러니까 부문별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해서 어업인단체에서 회의소와 관련해서 따로 요구가 있던 적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없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없었다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공적인 대의기구를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해수부하고 같이 논의했던, 협의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문대림 위원 그것을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지요?

○문대림 위원 어떤 의결을 한다는 거지요? 나는 이것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거부권 정국을 한 번 거친 법안이여 가지고 속도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위원님, 여기 해수부하고 산림청 관계자가 배석을 하고 있어서 혹시……

○문대림 위원 해수부는 누가 나왔어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입니다.

○문대림 위원 해수부 입장은 뭐예요, 이 법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일단 당초 어업인단체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대림 위원 지금 그분들의 입장은 어때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지금은 법안 내용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문대림 위원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받았어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그때 저희가 수협중앙회하고 한국수산물,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대표자분들 만나 가지고요……

○문대림 위원 언제 만났고 그게 공식적 의견 수렴이었어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예, 공식적으로 공문을 뿌려 가지고 그분들 모아 놓고……

○문대림 위원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그 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회의 결과 좀 보여 줘 봐요, 지금.

그러니까 해수부도 통합 설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당초 어업인단체의 반대로 인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어업인단체에서 반대를 철회하면서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

다.

○문대림 위원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의견드린 부분 중 반영이 안 된 부분 자체가 사실은 광역회의소에 어업인들 참여가……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혼재돼 가지고, 통합돼 가지고 꾸려진 농어업회의소도 있고 부문별로 어업회의소를 따로 요구하는 데도 있나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기초어업회의소 부분에서 어업을 따로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

○문대림 위원 따로 그렇게 해서 설립한 데는 없고?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아직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뭉뚱그려져서 하는 데는 21개인가 23개 있고?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그것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나는 이 법안 성안 과정 속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소외됐다라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해양수산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농어업회의소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업회의소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던 반면에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업인들이 농업인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 중심으로 한다면……

○문대림 위원 그러면 규모를 달리하면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어업회의소를 별도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경직되게 가져가지 말고 규모를 달리하면 되잖아요. 통일적 기준 말고 농림 분야하고 어업 분야를 따로 해서 규모를 달리 가져가면 되지요.

○문금주 위원 기초는 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기초는 따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규모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기본 조건을 다르게 두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조건을 다르게 뒀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좀 용이할 수 있게……

○문대림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기준이에요? 조건에 대한 그런 다른 기준이 언제부터 애기가 된 거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번에 해수부가 의견을 줘서 반영을 시킨……

○문대림 위원 의견 준 게 어느 시점이에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그때 어업인단체하고 협의 끝나고 나서……

○문대림 위원 그 협의가 언제쯤이냐고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4월 초였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14년 된 내용이잖아요. 14년 전부터 시범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4월이면 지난달이잖아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난달에 어떤 절차,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해수부의 공식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이진우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업인들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특히 윤준병 의원님 안이 발의된 다음에, 통합 대안이 발의된 다음에 저희가 수협중앙회 그리고 한수연 그리고 한국수산회에 의견 조희 공문을 돌리고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당시 참석하신 대표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장관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보고한 내용 가져와 보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8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어업협회의소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대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살필 시간을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 일단 통과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후속 작업은 언제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문대림 위원님 양해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15시20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11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일회독을 마쳤습니다. 지난번 법안심사 때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설명자료 있습니까? 갖고 왔습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아니요, 위원님들은 다 깔려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농협법도 오늘 통과해요?

○소위원장 윤준병 처리 안 해요. 설명은 했으니까, 어차피 이건 종료하고 다음 후반기로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의결까지 해 주시면 좋고.

(웃음소리)

쟁점이 됐던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고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제시한 대안에다가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소위 자료에는 그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하단에서 보시듯이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7페이지부터 앞부분에는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가 제시한 대안,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때 쟁점 요약된 것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금방 끝납니다.

7페이지의 2번 조합의 회계장부 공개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건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시는 의견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8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 보시듯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당초 정부대안의 조합원 1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정부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의 3번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에 대해……

○소위원장 윤준병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석전문위원님, 이걸로 설명하시면 되지 않나요? 이게 그때 쟁점이 나왔던 내용 좀 보완하자고 한 건데, 이거 정부에서 만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저희 소위 자료도 금방 설명이 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0페이지의 3번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 개입 강화에 따른 관치 우려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11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 보시듯이 내부 추천 인사인 회원조합장의 수를 당초 대안에서는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려서 현행 3명과 동일하게 하였고 대신에 정부 추천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면서 금융위원장 추천 인사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시면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위원회도 내부 인사인 회원조합장을 당초 대안의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농식품부 추천 1인을 유지하되 학계 추천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의 4번 이사의 부당한 자회사 경영 개입 금지에 관해서는 형벌 부과 대상인 금지행위 요건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임호선 위원님 지적이 있으서 가지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 농식품부의 감독권에 따라 시정 요구,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의 5번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이 아닌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 정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회장후보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문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의 6번 중앙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대안에서는 5년으로 정했는데 이를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수정을 하였고.

22페이지의 중앙회 정보공개 강화도 정보공개 요건을 앞서 말씀드린 조합과 같이 조합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의 8번 농협감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는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정부대안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외부위원 간 호선해서 선임을 하도록 수정을 하였고 감사 대상에서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지난번 소위 심사안에서 보신 내용과 달라진 내용들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에서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원장 윤준병 동일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은 사전에 정리된 대로 오늘 소위에서 의결하지는 않는데 다만 전반기 상임위가 끝나는 만큼 오늘까지 논의된 내용들 이거는 위원회 심의안으로 정리를 해서, 문구화한 작업 전체를 잘 정리해서 이후 후반기 상임위가 운영될 때 그 내용이 보고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전반기 소위 위원님들께도 지금까지 논의돼서 문구화한 작업 자체를 법률안으로, 개정안으로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조문화까지 다 끝내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지금 밖에서 전농이 집회하는 게 농협법 이슈입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혹시 정부 측에서 농민단체 그쪽 입장도 좀 수렴하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말씀 다 하셨어요?

○임호선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문금주 문대림 송옥주 윤준병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업정책관 윤원섭

○출석 진술인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선신(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장경호(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

이진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

임시회의록